#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00 발의연월일: 2021. 9. 10.

발 의 자:허종식・김교흥・김민기

김민석 · 김성주 · 김성환

김정호 · 김진표 · 박찬대

배진교 • 어기구 • 유동수

윤준병 • 이동주 • 이성만

이용선 · 정일영 · 정춘숙

최종유 · 홍영표 의원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수당의 지급 목적 중 하나가 아동 양육 가구의 양육비부담 경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은 아동이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지 못하고 사실상 미취학아동까지만 지급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되. 재정 소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법률 제 호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7세"를 "8세"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7세"를 각각 "8세"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7세"를 "8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7세"를 "8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전에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조사·질문, 아동수당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수 있다.
- 제4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7세 생일이 도래하여 2022년 3월 1일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1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3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해당 아동이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부칙제1조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월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3월 1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의 경우에는 제10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2022년 1월분 아동수당을 이미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u>7세</u> 미	지급액) ① <u>8세</u>
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b>.</b>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	~) ①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7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	8세
동수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	②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	
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7세</u> 미	<u></u> 8세
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	
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	
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 ④ (생 략)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생 략)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u>7세</u> 미만 아 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등 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 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다.

#### ⑥·⑦ (생 략)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5)
8세
<u> </u>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u></u> 8세

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 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 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